

# 일제강점기의 종교 지형과 종교 법규

고병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종교학 전공  
03250@aks.ac.kr

- I. 머리말
- II. 일제강점기의 종교 법규와 모법
- III. 종교 법규의 의미 층위
- IV. 종교 법규와 조선의 종교 지형
- V. 맺음말

## I. 머리말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하나의 종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가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1980년대 초부터 '다종교, 다종교현상, 다종교국가, 종교적 다원사회, 다종교사회' 등의 용어가 언론에 등장하였다.<sup>1)</sup> 학계에서도 1980년대 중반부터 '종교다원주의, 종교적 다원주의'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2)</sup>

현재까지 이런 용어들은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와 다문화사회'라는 용어처럼 흔히 사용되는 '다종교와 다종교사회'라는 용어 사이에도 별다른 구분이 없다. 그렇지만 법제적(法制的) 측면에서는 다종교와 다종교사회라는 용어를 구분할 수 있다. 여러 종교가 병존하는 상황에 대해 다종교나 다종교현상이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다면, 그 병존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작동되는 사회를 다종교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다종교사회는 법적·제도적으로 국가가 특정 종교만 국교로 공인하거나, 특정 종교를 조장(助長)하거나, 종교와 종교 아닌 것의 범주를 정하거나 종교로 인해 차별하는 상황이 불가능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 법제적 측면에서 다종교와 다종교사회를 구분하는 것은 종교 지형과 법규의 연관성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 사회를 다종교사회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즉 '종교의 병존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한국 사회에 있는가?'라는 물음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에는 '법 앞의 종교로 인한 차별 금지(제11조 제1항), 종교의 자유(제20조 제1항), 국교 불인정 및 종교와 정치의 분리(제20조 제2항)'가 규정되어 있다.<sup>3)</sup> 「교육기

- 
- 1) 「오늘의 세계와 民族主義」, 《동아일보》, 1981년 1월 9일자, 5면; 「韓國종교는 指導力 상실, 宗敎學會 가을學術 심포지엄」, 《경향신문》, 1982년 10월 22일자, 7면; 「활발한 基督教 海外선교, 37國에 宣敎師 3백23명 파견」, 《매일경제》, 1982년 11월 11일자, 9면; 「가족간의 '異敎'-현명한 '和解'의 길」, 《동아일보》, 1983년 12월 24일자, 11면; 「季刊 京鄕 〈思想과 政策〉 여름호 나와」, 《경향신문》, 1984년 6월 21일자, 11면; 「季刊 京鄕 〈思想과 政策〉 宗敎 특집 발췌」, 《경향신문》 1984년 6월 27일자, 3면.
  - 2) 김종서, 「現代 宗敎多元主義의 理解와 克服: P. L. Berger와 M. Eliade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7-3(1984); 박선영, 「불교적 교육과 종교적 다원주의」, 『한국불교학』 11(1986); 김경재, 「종교 다원주의와 예수그리스도의 주성」, 『신학연구』 27(1986); 강돈구, 「전통사상과 종교 간의 대화」, 『종교연구』 4(1988); 류경희,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힌두교와 기독교 태도의 비교」, 『종교학연구』 8(1989) 등.
  - 3) 「대한민국헌법」(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전부개정 1987. 10. 29.) 제11조,

본법」에서는 ‘교육에서 종교로 인한 차별 금지(제4조), 국공립학교에서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 금지(제6조)’를 규정하고 있다.<sup>4)</sup> 특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군형집행법」<sup>5)</sup> 등의 법규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과 하위 법규들은 국가가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특정 종교에 우월한 지위와 특권을 부여하거나 특정 종교를 조장하거나 개인에게 주어진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표면적이거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개인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종교단체를 만들거나 없애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종교단체의 생멸 현상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여러 지점에서 볼 때, 현대 한국 사회는 여러 종교의 병존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다소 갖춘 다종교사회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관련 법규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다종교’와 ‘다종교사회’의 개념 차이를 설명하는 방식은 법제가 특정 사회의 종교 지형과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을 수용한다면, 한국에서 ‘종교 법규가 언제부터 생겨났고, 어떤 내용의 법규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종교 법규가 어떤 식의 종교 지형을 유도했는지’ 등에 대한 물음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물음을 토대로 한국 사회의 종교 지형과 법제의 연관성을 살펴보려면 일제강점기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근대적 법제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시작된다. 역사적으로 근대적 법제를 주도한 기관은 청일전쟁(1894. 6.-1895. 4.) 초기, 1894년 7월부터 약 5개월 동안 합의체 방식으로 갑오개혁을 주도한 군국기무처(1894. 7. 27.-12. 17.)이다. 그리고 제2차 갑오개혁(1894. 12. 17.-1895. 7. 7.)에 이어, 청일전쟁 직후의 제3차 갑오개혁(1895. 8. 24.-1896. 2. 11.) 기간에도 여러 법규가 만들어진다. 그렇지만 유교의 향교재산 부분을 제외하면 종교를 직접 적용

---

제20조.

- 4) 「교육기본법」(시행 2016. 8. 30. 법률 제14150호, 개정 2016. 5. 29.)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6조(교육의 중립성).
- 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시행 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시행 2016. 2. 3. 법률 제14028호) 제2조(정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군형집행법)」(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599호, 일부개정 2014. 5. 20.) 제6조(차별금지).

대상으로 삼은 법규는 일제강점기에 생겨난다. 이것이 종교 지형과 법제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일제강점기에 주목해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이다.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사례를 가지고 법제가 한국의 종교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룰 내용은 종교 법규들과 모법(母法), 종교 법규들의 의미 층위, 종교 법규들이 조선의 종교 지형에 미친 영향이다. 이 글에서 지적한 종교 지형이 형성되는 과정에 근대적 법제가 작용했다는 내용을 통해 향후 종교 지형의 변화를 파악할 때 법제 또는 법규를 주요 변수로 주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II. 일제강점기의 종교 법규와 모법

1910년 한일병합과 함께 일본은 조선총독부를 설치한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는 대한제국의 법규 일부를 지속시키거나, 일본의 법규들을 모법으로 삼아 새로운 법규들을 시행하여 조선을 통치한다. 이러한 법규들 가운데에는 종교 법규가 들어 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종교법규에는 무엇이 있었고, 그 주요 내용과 모법은 무엇이었는가?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종교 법규의 종류는 다양하다. 일본의 신사신도와 조선의 유교를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종교 법규는 적용 대상이 종교인 경우와 간접적으로 종교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종교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인 경우는 다시 일본 종교에만 적용된 법규와 조선 종교에만 적용된 법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종교를 직접적인 적용 대상으로 겨냥한 법규와 그 적용 대상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이러한 종교 법규들을 보면,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신사신도, 그리고 조선의 유교와 불교에 대해 별도의 법규를 시행한다. 가장 먼저 시행한 법규는 1911년 6월의 「사찰령」과 「경학원규정」이다. 그리고 다른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1906년의 「종교 선포에 관한 규칙」도 있었지만, 1915년에 「포교규칙」을 제정·시행한다. 다만, 신사신도와 유교는 「포교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종교 범주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종교 법규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첫째, 「사찰령」은 「조선에 시행할 법령에 관한 건」(법률 제30호)에

표1-종교 관련 법규와 적용 대상(직접)

종교 법규	일본			조선			비고	
	신도	교파 신도	불교	기독교	유교	불교		기독교
「宗教ノ宣布ニ關スル規則」(통감부령 제 45호, 제정 1906. 11. 17, 시행 1906. 12. 1.)		○	○	○				• 폐지 1915. 10. 1. (조선총독부 초기 까지 적용)
「經學院規程」(부령 제73호, 제정 1911. 6. 15, 시행 大提學의 결정); 「明倫學院規程」(부령 제13호, 제정·시행 1930. 2. 26.); 「明倫專門學院規程」(부령 제13호, 제정 1939. 2. 18, 시행 1939. 4. 1.) 「文廟直員ニ關スル件」(부령 제127호, 제정 1911. 10. 28, 시행 1911. 11. 1.) 「郷校財産管理規則」(부령 제91호, 제정·시행 1920. 6. 29.) 「掌議ニ關スル規程」(江原道令 제16호, 제정·시행 1920. 9. 14.) 「地方文廟職員ニ關スル件」(부령 제68호, 제정·시행 1923. 4. 21.)					○			• 「郷校財産管理規程」(學部令 제2호, 제정·시행 1910. 4. 23.) • 재산: 인가제, 직원: 임면권
「寺刹令」(刹令 제7호, 제정 1911. 6. 3, 시행 1911. 9. 1.) 「寺刹令施行規則」(부령 제84호, 제정 1911. 7. 8, 시행 1911. 9. 1.)						○		• 재산: 허가제, 임명: 인가제 • 폐지: 1962. 1. 20.
「布教規則」(부령 제83호, 제정 1915. 8. 16, 시행 1915. 10. 1.)		○	○	○		○	○	• 선포자: 신고제, 일본종교포교관 리자: 인가제, 시설 설립·변경: 허가제 • 폐지: 1962. 1. 20.
「神社寺院規則」(부령 제82호, 제정 1915. 8. 16, 시행 1915. 10. 1.)	○		○					• 설립 등: 허가제, 주지·총대: 신고 제, 재산: 허가제 • 폐지: 1962. 1. 20.
「神祠ニ關スル件」(부령 제21호, 제정·시행 1917. 3. 22.)	○							• 시행: 발포일
「寺院規則」(부령 제80호, 제정·시행 1936. 8. 11.)			○					• 시행: 발포일
「神社規則」(부령 제76호, 제정·시행 1936. 8. 11.)	○							• 시행: 발포일

의거해서<sup>6)</sup>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총독이 제령(制令)으로 공포한 법규이다. 사찰 시설과 재산 처분에 대한 '총독 또는 지방장관 허가제', 본사(本寺)별 사법(寺法)과 주지 임명에 대한 '총독 인가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sup>7)</sup>

「사찰령」의 모범으로는 일본 문부성이 1898년 제14회 제국의회에 제출한 '종교단체법안'이 지적된다.<sup>8)</sup> 그렇지만 종교단체법안의 의도가 종교의 법인화를 통한 관리 시스템의 구축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sup>9)</sup>, 관련 내용의 일부가 「사찰령」에 있다고 해도<sup>10)</sup> 종교단체법안만 모범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사찰령」은 불교의 '법인화'를 지향한 법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한 1898년의 종교단체법안이 1884년 8월 태정관 포달(布達) 제19호 등을 포함해서 종래의 여러 법규를 종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sup>11)</sup>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은 「사찰령」도 일본 불교 관련 여러 법규를 취사선택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찰령」이 '제령(制令)'이라는 점에 주목해도 「사찰령」의 모범을 한 가지로 단정할 수 없다. 제령은 총독이 조선의 상황에 맞춰 제정한, 즉 일본에 없던 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둘째, 1911년 6월의 「경학원규정」은 1908년 10월의 「성균관관제」를

6) 「朝鮮ニ施行スヘキ法令ニ關スル法律」(明治 44. 3. 24. 법률 제30호)에 따르면, 조선에서 법률이 필요한 사항을 조선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고(제1조), 이 명령을 내각총리대신을 경유해서 칙제를 요청해야 한다(제2조).

7) 「寺刹令」(制令 제7호, 1911. 6. 3. 시행 1911. 9. 1.), 『조선총독부관보』 227호(1911. 6. 3.), 22-23면.

8) 김순석, 「朝鮮總督府의 「寺刹令」 공포와 30 본사 체제의 성립」, 『한국사상사학』 18 (2002), 504-505쪽.

9) 渡辺兵吉 編, 『宗教法案雜纂』(東京: 六合館, 1900), 1-32쪽. 제1조-제3조에 따르면, 종교 선포나 종교상 의식 집행이 목적인 사단이나 재단은 본법이 아니면 법인이 될 수 없고, '교회'는 공적으로 종교를 선포하거나 종교상 의식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절(寺)이 아닌 것을, 절은 사원을 소유하고 교법(教法)을 선포하고 법의(法儀)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10) 종교법안을 보면, 사찰을 설립할 때 사규칙(寺規則)을 만들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거나(제16조), 사규칙을 변경할 때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제17조) 내용은 「사찰령」 제3조와 연결된다. 또한 사찰에 주지(住職)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제18조)은 「사찰령」 제4조 제1항의 내용과 동일하다.

11) 「神仏教導職ヲ廢シ住職ヲ任免シ教師ノ等級進退ハ各管長ニ委任等ノ儀」(太政官布達 第十九号, 明治 17. 8. 11.), 『太政官布達(明治 17年)』(出版地·出版者·出版年月日 不明), 1-3쪽. 한편, 渡辺兵吉 編, 앞의 책, 1-32쪽에 따르면, 종교법안의 부칙 제47조에 "내무성 전달 사항(明治 14. 乙 第33號達, 戊 第3號達, 明治 15년 戊 第1號 達, 明治 17년 태정관 第19號 布達)에서 종교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있어, 당시의 종교 법안이 다양한 법규를 참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하고 있다. 내용상 특징은 경학원 직원(職員: 대제학(大提學), 부제학(副提學), 제주(祭酒), 사성(司成), 직원(直員)에 대한 총독의 임면권, 기본재산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독 인가제이다. 그리고 「성균관관제」처럼 인재를 양성해서 관리로 등용하는 것<sup>12)</sup>이 아니라, 「경학(經學)을 강구(講究)하고 풍교덕화(風教德化)를 비보(裨補)함을 목적으로」(제1조) 사회교화에 방점을 둔 것도 특징이다.<sup>13)</sup> 경학원에서 생도 교육 기능을 없앤 배경으로는 교육을 학교에 배정한 근대적 교육 시스템의 영향을 들 수 있다. 그와 관련해서 성균관은 한일병합 이전부터 일본 관료에게 ‘옛 유물’ 정도의 낙후된 시설로 인식된 바 있다.<sup>14)</sup>

경학원은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 시기인 1930년 2월에 명륜학원을 설치해 교육 기능을 갖춘다.<sup>15)</sup> 명륜학원은 중일전쟁으로 전시체제가 강화되던 상황에서 명륜전문학원(1939. 2.), 명륜전문학교(1942. 3.), 다시 1944년 10월에 ‘재단법인 조선명륜연성소로 바뀐다.<sup>16)</sup> 그렇지만 경학원의 성격은 ‘명륜(明倫)’이라는 용어가 암시하듯이 사회교화를 위해 윤리를 강조하는 기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경학원과 달리, 향교 재산에 대해서는 1910년 4월에 공포한 「향교재산 관리규정」을 적용하다가 1920년 6월부터 「향교재산관리규칙」을 적용한다.<sup>17)</sup> 전자의 특징은 향교재산을 ‘학부대신·관찰사·부윤·군수·특정관리인’ 체제로 관리하고 향교재산 수입을 향교·문묘(文廟)의 수리나 향사비(享祀費)보다 향교 소재 지역의 공립학교나 관찰사가 지정한 학교 경비에 우선 사용한다는 점이다. 후자의 특징은 향교재산의 활용에

12) 「成均館官制改正件」(칙령 제76호, 隆熙 2. 10. 29.), 『관보』 4216호(1908. 10. 31.), 87-88면.

13) 「經學院規程」(부령 제73호, 明治 44. 6. 15.), 『조선총독부관보』 237호(1911. 6. 15.), 101면.

14) 加藤政之助, 『韓國經營』(東京: 實業之日本社, 1905), 33-34쪽.

15) 「明倫學院規程」(부령 제13호, 昭和 5. 2. 26.), 『조선총독부관보』 943호(1930. 2. 26.), 1면; 朝鮮總督府社會課長, 「朝鮮の社會事業(八)」, 『朝鮮社會事業』 12-6(朝鮮社會事業協會, 1934), 38쪽. 설치 목적은 ‘유학의 교수와 인격의 도야’(제1조)이다.

16) 「明倫專門學院規程」(부령 제13호, 昭和 14. 2. 18. 시행 昭和 14. 4. 1.), 『조선총독부관보』 3623호(1939. 2. 18.), 161면; 「明倫專門學校設立」(조선총독부 고시 제397호, 昭和 17. 3. 25.), 『조선총독부관보』 4545호(1942. 3. 25.), 208면; 「法人組合登記財團法人 明倫專門學校 變更」, 『조선총독부관보』 5349호(1944. 12. 2.), 16면.

17) 「鄕校財産管理規程」(學部令 제2호, 隆熙 4. 4. 23.), 『官報』 4136호(隆熙 4. 4. 28.(木曜)). 內閣法制局官報課, 155쪽; 『한말근대법령자료집』 IX(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2), 415-417쪽.

대한 총독 인가제, 매년 수지 예산에 대한 도지사 인가제, 그리고 향교재산 수입을 학교 경비보다 문묘(文廟)·교화(教化)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sup>18)</sup>

셋째, 1915년 10월의 「신사·사원규칙」은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총독이 공포한 법규로, 적용 범위는 신사(神社, じんじや)와 일본 불교 사원(寺院)이다. 주요 내용은 신사·사원의 설립·이전·폐지·병합에 대한 총독 허가제, 사원의 주지와 신사의 총대에 대한 신고제, 시설 사용에 대한 도장관 허가제, 재산 문제에 대한 총독 허가제 등이다.<sup>19)</sup> 이 규칙이 제정된 주요 배경으로는 일본인 이주자가 늘면서 많아진 신사나 사원에 설비를 갖추게 하려는 의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의도의 이면에는 신사가 '일본의 국체(國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설립과 유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sup>20)</sup>

이어 1917년 3월에는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총독이 「신사(神祠, しんし)에 관한 건」을 공포해서<sup>21)</sup> 신사(神社)보다 인적·물적 규모가 작은 신사(しんし)의 설립을 유도한다. 그 특징은 신사의 설립·변경·폐지에 대한 '총독 허가제'로 「신사·사원규칙」의 경우와 유사하다.

「신사·사원규칙」의 모범으로는 메이지유신 이후에 신사와 사원에 관한 법규가 적지 않게 공포되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1878년 9월 내부성에서 공포한 「사사취급개칙(社寺取扱概則)」에는 「신사·사원규칙」의 제1조와 제2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sup>22)</sup> 그렇지만 「신사·사원규칙」의 공포 시점이 1915년 10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사의 경우에 가장 근접한 모범은 기존의 신사 관련 법규들을 종합한 1913년 4월의 내부성령 제6호이다.<sup>23)</sup>

18) 「郷校財産管理規則」(부령 제91호, 大正 9. 6. 29.), 『조선총독부관보』 2365호(1920. 6. 29.), 327-328면, 341-342면.

19) 「神社寺院規則」(부령 제82호, 大正 4. 8. 16. 시행 1915. 10. 1.), 『조선총독부관보』 911호, 1915년 8월 16일, 153-154면.

20) 「神社寺院規則, 制定の 主旨와 今後の 神社」, 《매일신보》, 1915년 8월 20일자, 2면; 「神社ノ神職ニ關スル件」(관동첩 제120호, 大正 5. 7. 19.), 『조선총독부관보』 1188호(1916. 7. 19.), 273면.

21) 「神祠ニ關スル件」(부령 제21호, 大正 6. 3. 22.), 『조선총독부관보』 1387호(1917. 3. 22.), 309면(조선역문 321면).

22) 「社寺取扱概則」(明治 11. 9. 9. 内務省 達乙 第57호), 市岡正一 編, 『大日本地方政典』(東京: 博行館, 1897), 751-753쪽; 服部正貞, 『僧侶必携 現行寺院法規』(東京: 寿永堂, 1891) 참조.

23) 「官國幣社以下神社ノ祭神, 神社名, 社格, 明細帳, 境内, 創立, 移轉, 廢合, 參拜, 拜觀, 寄附金, 講社, 神札等ニ關スル件」(内務省令 第6號, 大正 2. 4. 21.), 広島県神職管理所



1936년 8월에는 「신사·사원규칙」이 폐지되고, 「신사규칙」과 「사원규칙」이 각각 제정되면서<sup>24)</sup>, 신사와 사원이 별도로 관리되기 시작한다. 「신사규칙」은 종래처럼 신사의 창립·이전·폐지·합병 등에 대한 총독 허가제를 채택하지만, 「신사·사원규칙」보다 통제 수위가 높다. 예를 들어, 신사 건설의 준공이 「신사·사원규칙」에서 ‘총독 신고(届出)’ 사항이라면, 「신사규칙」에서는 ‘총독 허가’ 사항이 된다. 그에 비해 「사원규칙」은 사원의 창립·이전·폐지·병합에 대한 총독 허가제를 채택하면서 시설의 준공을 ‘총독 신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사·사원규칙」과 유사하다.<sup>25)</sup>

넷째, 1915년 8월의 「포교규칙」은 종래의 「종교 선포에 관한 규칙」과 달리 적용 범위를 조선의 종교로 확대하고 있다. ‘종교 선포 종사자’에 대한 ‘신고제’, 일본 종교 포교 관리자에 대한 ‘인가제’, 종교 시설의 설립과 변경에 대한 ‘허가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sup>26)</sup> 일본 종교에만 ‘인가제’를 채택한 것은 「종교 선포에 관한 규칙」의 연장선에서 일본 종교의 무분별한 조선 포교를 억제하면서도 인가제를 통해 일본 종교의 문화적 침범(尖兵) 역할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포교규칙」의 모범으로는 1898년의 종교단체법안<sup>27)</sup>, 또는 1899년 7월의 「신불도 이외의 종교 선포 및 전당·회당 등에 관한 규정」<sup>28)</sup>이 거론되지만, 어느 하나만 모범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1899년 7월의 법규는 신도와 불교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포교규칙」과 차이가 있다. 그 외에 일본정부가 신도와 불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여러 법규도 「포교규칙」의 내용과 연관된다.<sup>29)</sup> 게다가 「포교규칙」이 제정되

編, 『現行神社法令』(広島県: 広島県神職管理所, 1914), 67-88쪽.

24) 「神社寺院規則」昭和十一年八月十日限リ之ヲ廢止ス(부령 제81호, 昭和 11. 8. 11.), 『조선총독부관보』 2874호(1936. 8. 11.), 82면; 「神社規則」(부령 제76호, 昭和 11. 8. 11.), 『조선총독부관보』 2874호(1936. 8. 11.), 78-81면; 「寺院規則」(부령 제80호, 昭和 11. 8. 11.), 『조선총독부관보』 2874호(1936. 8. 11.), 82-83면.

25) 신사 설립 사항에 대해서는 「신사·사원규칙」 제1조와 「신사규칙」 제1조, 「사원규칙」 제1조와 「신사·사원규칙」 제2조가 대응된다.

26) 「布教規則」(부령 제83호, 大正 4. 8. 16. 시행 大正 4. 10. 1.), 『조선총독부관보』 911호(1915. 8. 16.), 154-155면.

27) 윤선자, 「1915년 〈포교규칙〉 공포 이후 종교기관 설립 현황」, 『한국기독교와 역사』 8(1998), 111쪽.

28) 안유림, 「일제의 기독교 통제정책과 〈포교규칙〉」, 『한국기독교와 역사』 29(2008), 42-45쪽, 66쪽.

29) 「神佛道以外ノ宗教ノ宣布及教會堂等ノ取締規程」 또는 「神佛道以外ノ宗教ノ宣布及堂

면서 폐지된 「종교 선포에 관한 규칙」도 통감 인가 사항으로 포교방법(제1조)과 종교 시설 설립(제3조)에 관한 내용이 있어 모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포교규칙」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법규들뿐만 아니라 「종교 선포에 관한 규칙」, 그리고 일본 내 신도와 불교에 관한 여러 법규를 혼합한 법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포교규칙」의 중요성은 여러 종교 법규 가운데에서도 조선의 종교 지형과 밀접한 관련성을 있다는 데에 있다. 「종교 선포에 관한 규칙」이 1905년 11월 「제2차 한일협정」 제3조에 의거해서 ‘외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통감부의 역할 때문에<sup>30)</sup> 대한제국에 진출한 ‘일본 종교의 한국 포교자(종단 또는 개인)에 대한 통감 인가제만 규정했다면<sup>31)</sup>, 「포교규칙」은 조선의 종교까지 적용 대상으로 삼아 조선 사회에 일본의 종교 범주를 본격적으로 이식·확산시킨 법적 장치였기 때문이다. 즉 「포교규칙」은 일제강점기 내내 종교를 ‘신도(神道)·불도(佛道)·기독교(基督教)’로 규정해서(제1조) 조선 사회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종교 범위를 고정·확산시킨 법규로 작용한다.

### III. 종교 법규의 의미 층위

제II장에서 서술한 종교 법규들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법규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보면 여러 의미 층위를 파악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경우, 법규들은 기본적으로 헌법적 가치와 연관되어 소극적으로는 헌법적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있고, 적극적으로는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의 종교 법규들도

字會堂說教所講義所取締規程」(內務省令 第41號, 明治 32. 7. 27.), 文部省宗教局, 『宗教要覽』(東京: 文部省宗教局, 1916), 3쪽, 12-14쪽; 警視庁總監官房文書課 編, 『警察法令類纂』 2輯(東京: 自警會, 1927), 98-101쪽(「宗教宣布=關スル届出方」, 明治 32. 7. 내무성령 제41호); 宗教行政研究會 編, 『(昭和 9年版) 宗教法令類纂』(東京: 宗教行政研究會, 1934), 223-238쪽(기독교). 내무성령 제41호에 대한 명칭은 자료에 따라 다소 다르게 서술된다.

30) 「日韓協約」(명치 38. 11. 17. 광무 9. 11. 17.), 統監府總務部 總務部 內事課 編, 『韓國事情要覽』(京城: 日韓圖書印刷會社, 1906), 1-4쪽.

31) 「宗教ノ宣布ニ關スル規則」(통감부령 제45호, 시행 1906. 12. 1. 제정 1906. 11. 17.), 송병기 편, 『통감부법령자료집 (상)』(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2), 234-235쪽.

일본의 헌법적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

1910년의 국권 상실 상태를 고려하면, 일제강점기의 최상위법은 메이지정부가 1889년 2월에 제정한 「대일본제국헌법」(시행 1890. 11., 이하 「일본헌법」)이다. 이 점은 조선총독부재판소의 최종 재판 근거, 특히 1919년 3·1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안법」과 「출판법」 적용 여부에서 유추할 수 있다.<sup>32)</sup> 조선에서 최상위법이 「일본헌법」이었다는 점은 종교 법규들도 다른 법규들처럼 조선인을 「일본헌법」 제1조 이하에 담긴 '천황 중심의 세계관'에 편입시키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메이지정부는 「일본헌법」 제28조에 '신민(臣民)'의 권리·의무로, '일본의 안녕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신민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는 조건을 붙인 '신교의 자유'를 명시한다.<sup>33)</sup> '일본의 안녕질서와 신민의 의무'라는 범위 설정은 신교의 자유가 '일본인'에게만, 그리고 천황 중심의 세계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제한된' 자유라는 점을 시사한다.

「일본헌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1947년의 「신헌법」과 달리<sup>34)</sup>, '제한된 신교의 자유를 명시한 제28조' 외에 종교 관련 조항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가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별도의 종교 범위를 정하거나, 특정 종교를 차별하거나, 특정 종교를 조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당시 일본에서는 '교파신도·불교·기독교'만 '종교로 생산하는' 법규들이 시행되어 이들만 외면적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즉 종교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이 만들어진다.<sup>35)</sup>

32) 「朝鮮獨立運動의 一大 史劇, 萬人의 注目할 第一幕이 開하다」, 《동아일보》, 1920년 7월 13일자, 3면.

33) 「대일본제국헌법」(제정 1889. 2. 11. 시행 1890. 11. 29.) 제28조.

34) 「日本国憲法」(昭和 21. 11. 3. 시행 1947. 5. 3.) 제20조에 신교의 자유(信教の自由) 보장,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의 특권 부여나 정치상 권력 행사 금지나 종교상 행위·축전(祝典)·의식·행사 참가에 대한 강제 금지, 국가와 소속 기관의 종교교육과 종교활동 금지, 제89조에 종교단체의 조직·활동·사업에 대한 공금(公金)과 기타 공적 재산(公の財産)의 지출 금지가 명시된다(www.e-gov.go.jp).

35) 1900년 자료를 보면, 일본은 정교합일제(국교주의와 교국주의)가 아닌 정교분리제(방임주의와 공인주의)를 채택, 즉 '정신적 공인주의(신도·불교)와 방임주의(기타 종교)를 병행'한다. 이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공적 사단(公の社團)으로 간주해 특권과 자주권을 허용하되 정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입장과 국가의 지고권(至高權)에 복종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를 사설단체의 일종으로 보는 입장의 병행이다(内山正如·瑜伽理円, 『世界宗教一斑』, 東京: 博文館, 1900, 197-229쪽). 1915년 자료를 보면, 일본은 '국교주의(1개 종교=국교), 공인주의(2-3개 종교=公法人), 각종(各宗)평등주의 또는 정교분리주의(종교단체=일반 私法人)' 가운데 각종평등주의를 채택해 안녕질서를 방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일본의 종교 현실이 제II장에서 서술한 여러 법규를 통해 조선 사회에 이식되었다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여러 종교 법규를 종합해보면, 최소한 세 가지 의미 층위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의 교파신도와 불교, 조선의 불교, 그리고 기독교만 ‘종교’로 공인된다. 종교라는 범주와 범위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러한 방향 설정은 ‘종교’ 범위를 규정한 1915년의 「포교규칙」에 토대를 두고 있다. 1900년대에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등에서 ‘종교’라는 용어를 유통시킨 바 있지만<sup>36)</sup>, 「포교규칙」은 제도적으로 종교 범위를 교파신도·불교·기독교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둘째, 불교와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단체를 종교로 공인하지 않는다. ‘종교와 비슷하지만 종교가 아닌 것’의 범주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러한 방향 설정의 근거도 「포교규칙」이다. 조선총독부는 「포교규칙」에서 교파신도·불교·기독교 외의 종교단체에 대해 종교유사단체로 인정할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실제로 인정한 적은 없다. 특히 조선의 신종교와 무속은 ‘종교’ 범주에서 배제되어, 경찰 조직의 감시와 단속 대상이 되고, 주로 표2와 같은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물론 이러한 법규들은 조선인 전체가 적용 대상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신종교단체와 무속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적용된다. 그렇지만 조선의 신종교단체와 무속은 종교로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로 공인된 경우에 비해 이러한 법규가 적용될 소지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신종교 문제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부분은 조선의 신종교와 선교사가 개입된 ‘개신교계 신종교’에 대한 인식과 법적 대우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안식교<sup>37)</sup> 등이 ‘개신교계 신종교’로 인식되지만,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단체에 ‘기독교 교파’ 범주를 적용해서 종교유

---

해하거나 신민의 의무에 배치되지 않는 한 신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종파에 따른 법령상 차이가 없다고 한다(永野清·田口春二郎, 『朝鮮行政法要論 各論』, 巖松堂京城店, 1915, 241~242쪽). 그렇지만 「포교규칙」을 고려하면, 현실적 공인주의(신도·불교·기독교)와 정신적 국교주의(신사신도)를 병행했다고 볼 수 있다.

36) 「宗校位置」, 《皇城新聞》, 1901년 1월 8일자, 2면; 「宗教結社法案의 公布」, 《皇城新聞》, 1901년 7월 11일자, 1면; 「法國宗教와 教民」, 《皇城新聞》, 1901년 11월 30일자, 1면; 「宗教新聞」, 《皇城新聞》, 1902년 5월 13일자, 2면; 「宗教改革이 爲政治改革之原因」, 《大韓每日申報》, 1905년 10월 11일자, 2면.

37) 안식교의 공식 명칭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SDA: Seventh Day Adventist Church)’이다.

표2-신종교단체와 무속에 적용된 법규와 특징

유형	법규 목록	특징
보안	「保安法」(법률 제2호, 1907. 7. 27.) 「保安規則」(통감부령 제10호, 1906. 4. 17.)	결사 해산, 처벌 집회 해산, 처벌
경찰범 처벌	「警察犯處罰令」(통감부령 제44호, 1908. 10. 1.) 「韓國에 있어서의 犯罪即決令」(칙령 제240호, 1909. 10. 16.) 「犯罪即決例」(제령 제10호, 明治 43. 12. 15.); 「犯罪即決例 施行手續」(훈령 제72호, 1910. 12. 30.); 「犯罪即決例中改正」(제령 제12호, 시행 1912. 3. 18.) 「朝鮮答刑令」(제령 제13호, 1912. 3. 28.) 「警察犯處罰規則」(부령 제40호, 1912. 3. 25.)	처벌
집회 금지	「政治에 관한 屋外多衆集會를 禁하는 件」(統監府 警務總監部令 제3호, 1910. 8. 23.) 「統監府 警務總監部令 제3호(政治에 관한 集會 或은 屋外多衆集會의 禁止)」(내각 고시 제98호, 1910. 8. 24. 隆熙 4년) 「政治=關スル犯罪處罰ノ件」(제령 제7호, 1919. 4. 15.)	집회 금지, 처벌
치안 유지	「治安維持ノ爲ニスル罰則=關スル件」(칙령 제403호, 1923. 9. 7.) 「治安維持法」(법률 제46호, 1925. 4. 21.); 「治安維持法中改正」(법률 제54호, 1941. 3. 8.) 「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제령 제8호, 1941. 2. 12.)	처벌
기타	「朝鮮民事令」(제령 제7호, 明治 45. 3. 18. 시행 1912. 4. 1.) 「朝鮮刑事令」(제령 제11호, 明治 45. 3. 18. 시행 1912. 4. 1.)	※종교법인화 현상 참조

사단체가 아니라 종교로 인식하고 대우한다. 실제로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1935년 『조선의 유사종교』를 보면, 종교유사단체가 동학계(東學系) 17개, 흠치계(岫叻系) 11개, 불교계 10개, 승신계(崇神系) 16개, 유교계 7개, 계통불명(系統不明) 5개로 분류될 뿐<sup>38)</sup>, '기독교 계통'이 없다. 이는 기독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지만, 외국 선교사들과 마찰을 빚지 않으려는 조선총독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과 대응은 개신교가 교파 중심의 지형을 갖추는 데 일조하게 된다.

셋째, 일본의 신사신도와 조선의 유교를 종교 범주에서 배제한다. '아예 종교로 볼 수 없는 것'이라는 범주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러한 방향 설정의 근거는 「경학원규정」, 「신사·사원규칙」 등이다. 신사신도의 경우는 일본에서 '신사비종교론'을 통해 신사신도가 종교가 아니라 '국가 제사'라고 정립된 인식이 조선에 적용된다. 그렇지만 유교의 경우는

38)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調査資料 第42輯)』(朝鮮總督府, 1935), 18-478쪽.

애초부터 종교 범주와 무관했던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한제국정부는 유교를 ‘ 으뜸이 되는 가르침’으로서 ‘종교’로 인식한 바 있고, 일본의 한국주차헌병대사령부는 ‘신교(信教)’ 부분에 유교를 포함시켜<sup>39)</sup>, 유교를 근대적 종교 범주로 인식한 바 있다.

이러한 종교 범주들의 종합적인 의미 층위 외에 개별 종교 범주의 의미 층위도 세부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찰령」만 해도 세 가지 의미 층위를 보인다. 첫째, 조선 불교의 일원화이다. 실제로, 「사찰령」 이후, 1911년 11월부터 30개 본사의 주지가 인가를 받기 시작한다.<sup>40)</sup> 1912년 6월 원종종무원에서 개최된 제1회 30본산 주지회의에서 주지가 ‘선교겸학(禪敎兼學)’, 종명이 ‘조선불교선교양종’으로 정해지고, 선교양종30본산회의소가 조직된다.<sup>41)</sup> 이어 동년 7월부터 해인사를 시작으로 30개 본사가 1913년 3월 말까지 「본말사법」을 인가받는다.<sup>42)</sup> 둘째, 조선 불교가 일원화되면서 조선 불교에 대한 일본 불교 각 종파의 경쟁적 포교 활동이 저지된다.<sup>43)</sup> 셋째, 사법(寺法)과 주지 임면 등에 대한 인가제와 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제를 통해 조선 불교의 모든 사찰과 그 재산의 처분이 통제를 받게 된다.

헌법과 하위 법규들의 연관성, 즉 하위 법규들이 헌법적 가치를 벗어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여러 종교 법규의 세 가지 의미 층위도 「일본헌법」의 가치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정부가 정한 ‘종교’ 범주를 토대로 조선총독부가 교파신도·불교·기독교만 ‘행정’ 대상으로 삼은 행위, 신종교단체와 무속을 종교 범주에서 배제시켜 경찰 조직의 감시와 단속 대상으로 삼은 행위, 그리고 조선의 유교를 종교 범주에서 배제시켜 ‘행정’ 대상으로 삼은 행위, 조선의 불교를 일원화시킨 행위 등은 결과적으로 종교 영역을 「일본헌법」이 지향한 천황 중심의 세계관에 편입시켜 관리하려는 의도를

39) 韓國駐劄憲兵隊司令部, 『韓國社會略說』(韓國駐劄憲兵隊司令部, 1910), 26-34쪽.

40) 「社寺, 宗教-住持就職認可」, 『조선총독부관보』 369호(1911. 11. 18.)(함남 장관이 10월 20일자로 楊萬基를 歡喜寺 주지로 인가); 『조선총독부관보』 370호(1911. 11. 20.).

41) 「寺刹ノ宗旨稱號ヲ妄リニ設ケシメサル件」(內務部長官 官通牒第229號, 1912. 6. 26.). 30본산주지회의원 발족 경위는 한동민, 『‘寺刹令’ 體制下 本山制度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155쪽 참조.

42) 「社寺, 宗教-寺法認可」, 『조선총독부관보』 556호(1912. 7. 4.).

43) 카미벳부 마사노부, 『近現代 韓日 宗教政策 比較研究: 佛敎敎團의 變遷을 中心으로』 (지식과교양, 2011), 146쪽.

제도적 차원에서 실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IV. 종교 법규와 조선의 종교 지형

여러 종교 법규의 의미 층위들은 조선의 종교 지형의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1915년 「포교규칙」은 ‘교과신도, 불교, 기독교’만 종교로 인식하고, 유교와 신종교와 무속을 종교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물론 종교의 자유도 종교로 공인된 종교만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조선에서는 ‘공인종교’<sup>44)</sup> 중심의 종교 지형이 굳어진다.

다만, 종교 법규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다소의 변화를 겪는다. 3·1운동 이후, 일본정부는 ‘조선인의 이상적 일본인화’를 목표로 정신적·문화적 측면을 중시하고, ‘문화정치’를 표방한다.<sup>45)</sup>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종교 영역에서는 1919년 8월에 ‘학무국 종교과’를 신설하여 종래 내무부의 ‘종교’ 행정을 이관하고, 일부 법규를 완화하거나 새로 시행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게다가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 등 전시체제하에서는 황민화(皇民化)를 강조하면서 공인종교와 유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유교에 대해서는 1910년의 「향교재산관리규정」, 1911년의 「경학원규정」과 「문묘 직원(文廟 直員)에 관한 건」에 의거해서 종래 ‘성균관과 향교 체제’ 대신에 ‘경학원과 향교 체제’를 갖춘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향교 재산 수익은 대체로 학교 경비로 투입되어 유림의 참여는 제한된다. 그렇지만 1919년 10월에 유림과 관련이 깊은 「묘지·화장장·매장·화장 취체규칙」을 개정해서 공동묘지제도의 유지와 함께 사설묘지(가족묘)까지 인정하고<sup>46)</sup>, 1920년에 「향교재산관리규칙」과 「장의(掌議)에 관한 규정」을 시행해서 유림의 향교 참여를 유도·지원한다. 이어 1930년에는 경학원에 명륜학원을 설치해서 ‘교육 기능’을 일부

44) 「公認宗教 信徒」, 《동아일보》, 1924년 3월 1일자, 1면.

45) 山崎丹照, 『外地統治機構の研究』(東京: 高山書院, 1943), 115-117쪽.

46) 「墓地火葬場埋葬及火葬取締規則」(부령 제123호, 1912. 6. 20.); 「墓地火葬場, 埋葬及火葬取締規則中改正」(부령 제152호, 大正 8. 9. 30. 시행 大正 8. 10. 15.), 『조선총독부 관보』 2142호(1919. 9. 30.), 343-344면.

복원시킨다. 그렇지만 여러 변화를 관통하는 부분은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 사회교화기관이라는 인식이다. 유립도 1934년부터 「의례준칙」의 확산<sup>47)</sup>과 전시체제하에서의 황민화를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한다.

불교에 대해서는 1911년의 「사찰령」에 의거해서 30본산 중심의 본말사 제도를 갖추게 한다. 1924년에 화엄사가 본산이 되어 30본산이 31본산으로 바뀌지만, 「사찰령」으로 인해 조선의 불교는 일원화되고 종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1911년 당시, 불교 종파가 천태종 2파, 진언종, 정토종, 임제종 9파, 일련종 7파, 시종(時宗), 융통염불종(融通念佛宗), 법상종, 화엄종 등 약 13종로 구별되던 일본의 상황과 다른 방향이다.<sup>48)</sup> 조선 불교의 일원화 정책은 원종뿐 아니라 그 대항마로 1911년 1월경부터 한용운·박한영 등이 추진한 임제종의 해체, 그리고 일본 불교와 조선 불교 사찰의 본말사 관계 해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49)</sup>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조선 불교계가 종래 30본산의 '연합'사무소 체제를 대체할 중앙집권 체제를 지향한다. 조선총독부는 1922년 12월 28일자로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을 재단법인으로 허가한다.<sup>50)</sup> 그리고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은 1924년 3월에 반대편에 있던 3개 본산이 가입하면서 "전조선 불교의 통일중앙기관"이라는 위치를 갖게 된다.<sup>51)</sup>

조선 불교의 중앙집권 체제 갖추기는 전시 상황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중일전쟁 시기인 1937년과 1938년 사이에는 31본산의 중앙 통제를 위해 '총본산 대응전'을 건축한다.<sup>52)</sup> 그리고 교육사업과 이재구조(罹災救助), 진휼구호(賑恤救護), 복리시설(福利施設), 사회교화 등을 강조하는 데<sup>53)</sup>, 사회교화는 특히 십전개발 운동에 대한 협력으로 나타난다.<sup>54)</sup>

47) 「儀禮準則制定=關スル件」(官通牒 제39호, 1934. 11. 10.).

48) 高橋友太郎, 大日本統計学会 編(改正) 大日本統計表一覽』(東京: 春江堂, 1911), 14쪽. 이 자료는 1911년 조사된 내용이다.

49) 카미벳부 마사노부, 앞의 책, 162-163쪽.

50) 「事務室 爭奪로 格闘, 작일 오전 각황사 안의 활극, 량편의 간부 일곱 명을 인치, 《동아일보》, 1923년 2월 25일자, 3면; 「佛敎敎務院 財團法人, 유덤사에서 반대 의사를 결의, 《동아일보》, 1922년 12월 28일자, 3면.

51) 「三十本山 團結로 普成高普 經營, 총무원과 교무원이 연합하여 육심만원 재단법인으로 경영, 東光校는 普成校로 合併, 《동아일보》, 1924년 4월 3일자, 2면.

52) 「京城에 總本山 創建코, 佛敎의 社會化에 進出, 卅一本山の 中央集權制 完成, 山間에서 街頭에로!」, 《동아일보》, 1938년 10월 23일자, 2면.

53) 「朝鮮佛敎와 社會事業」, 《동아일보》, 1939년 4월 8일자, 1면.

54) 「報恩 心田開發 講演」, 《동아일보》, 1937년 10월 23일자, 7면.



1940년에는 조선총독부가 사찰의 통할 기관이 없어 승려의 정신적 결합을 도모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총본산 태고사(太古寺) 관련 법령의 개정을 심의한다.’<sup>55)</sup> 그리고 1941년부터 태고사가 ‘조선불교 조계종 총본사’가 되어 불교계는 신사참배 등에 적극 참여한다.<sup>56)</sup> 이러한 변화를 관통하는 부분은 조선 불교에 대한 일원화 관리 정책이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의 국제적 역학 관계를 고려하여 협조를 구하는 모양을 취한다. 1910년 가을에 데라우치 마사다케 총독이 19명의 교회지도자를 일본으로 초청·환대한 것, 한국 YMCA를 지원한 것 등이 해당 사례이다. 다수의 선교사도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환영하는 태도를 보인다. 비록 1910년 겨울과 1911년의 ‘백만인 구령운동’ 과정에서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인 ‘105인 사건’이 발생하지만 선교사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건으로 기독교와 일본정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지만<sup>57)</sup>, 조선총독부는 대체로 기독교 선교사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1919년 3·1운동 직후 조선총독부가 먼저 선교사들에게 의견을 구했다는 점도 이러한 관계를 시사한다.<sup>58)</sup>

유교나 불교와 달리 기독교는 조선총독부와 협조하에 일원화 문제에서 벗어나 의료, 사회복지, 교육 등의 영역에서 교파별로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일반 법규의 적용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의료선교 활동에 대해서는 1913년에 시행된 「의사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규의 핵심은 외국인의 의사 면허에 대한 총독의 인정이다.<sup>59)</sup> 학교교육

55) 「佛徒의 精神 結合 促進, 總本寺 太古寺 建設, 寺刹關係法令의 改正도 審議」, 《동아일보》, 1940년 7월 3일자, 2면(이 기사는 조선총독부가 태고보우가 창건 주석한 경기도 공양군 소재의 태고사를 경성부로 이전해서 총본사로 하고 제정·감독·기타 관계 법령을 개정하려고 심의 중이라는 내용이다). 김광식, 「대한불교조계종의 성립과 성격: 1941-1962년의 조계종」, 『한국선학』 34(2013), 201-203쪽에 따르면, 총본산 건설을 통한 종단 창설은 1937년 2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본산준지회의에서 결의된다. 이후 총본산으로서 각황사 재건축이 본격화되어 1938년 10월 25일에 대웅전을 현 조계사 위치로 이전·준공한다. 그리고 1940년 7월 15일에 총본사 사격(寺格)의 재검토 차원에서 태고국사를 계승하여 각황사의 명칭을 태고사로, ‘조선불교 선교양종’의 종명을 ‘조선불교 조계종’으로 변경하고, 1941년 3월 23일부로 ‘조선불교조계종 총본사 태고사 법’의 인가를 받는다.

56) 「宗告文」, 『曹溪宗報』 21號(朝鮮佛敎 曹溪宗 總本寺 太古寺, 1941), 1-6쪽.

57) Wi Jo Kang 저, 서정민 역, 『한국 기독교사와 정치』(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5), 75-84쪽.

58) 「왜 총독부는 선교사들을 청하야 의론, 선교사를 쫓아내고」, 《신한민보》, 1919년 5월 6일자, 3면.

59) 「醫師規則」(조선총독부령 제100호, 大正 2. 11. 15.), 《매일신보》, 1913년 12월 26일자,

에 대해서는 제1차 「조선교육령」(1911. 8.-1922. 2.) 시기에 제정·개정된 「사립학교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한일병합 초기에는 제1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사방배(四方拜, 1. 1.)와 원시제(元始祭, 1. 3.) 등 신사신도 관련 의식이 포함된 보통학교의 경우와 달리<sup>60)</sup>, 1911년의 「사립학교규칙」에 종교교육이나 의식 관련 제한이 없어<sup>61)</sup> 별다른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1915년 「포교규칙」은 개신교 교파를 인정해서 교세가 약한 교파도 ‘유사종교단체’가 아니라 기독교로 대우한다. 이 때문에 미국의 북장로회·북감리회(미감리회)·남장로회·남감리회·침례회, 영국성공회, 오스트레일리아장로교회, 캐나다장로회, 영국의 구세군, 동양선교회(성결교회), 안식교회, 러시아정교회, 일본조합교회(회중교회) 등<sup>62)</sup> 여러 교파가 경쟁적으로 활동하면서 개신교 교세가 확장세를 유지한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에 「사립학교규칙」을 개정하여 ‘교육과 종교의 분리’를 현실화하기도 한다. 이 법규는 보통·실업·전문교육을 하는 사립학교가 각각 보통·실업·전문학교규칙에 준해 교과과정을 정하고 그 외의 교과과정을 추가할 수 없도록 만든다.<sup>63)</sup> 그리고 이에 근거해 ‘사립학교의 관·공립보통학교화’가 진행되면서<sup>64)</sup> 사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이나 의식이 금지된다. 조선총독부는 사립학교들을 설득해서 협조를 구하는 작업을 진행했지만<sup>65)</sup>, 이미 일본정부가 1899년에 사립학교의 종교교육과 의식을 금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개정 방향은 예정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선교사들의 반발로 일부 타협이 이루어지지만<sup>66)</sup>, 교육과 종교의 분리라는 조선총독부의 입장은 지속된다.

9면.

60) 고병철,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박문사, 2012), 76-83쪽, 104-124쪽. 제1차 조선교육령의 핵심 내용은 ‘교육칙어의 취지에 따른 공립 보통학교제’ 시스템의 완비이다.

61) 「私立學校規則」(부령 제114호, 1911. 10. 20. 시행 1911. 11. 1.)에서 통제와 관련된 부분은 조선총독에게 학교 폐쇄권(제14조)이다. 한편, 「私立學校令」(칙령 제62호, 1908. 8. 26. 시행 1908. 10. 1.)의 경우에도 종교교육이나 의식에 대한 제한이 없다.

6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기독교문사, 1997a), 183-193쪽.

63) 「私立學校規則中改正」(부령 제24호, 1915. 3. 24. 시행 1915. 4. 1.), 『조선총독부관보』 789호(1915. 3. 24.)(제6조의 2 참조).

64) 고병철, 앞의 책, 112쪽.

65) 「祝祭日當日私立宗教學敎學式禮拜ニ關スル件」(관통첩 제209호, 1915. 7. 1.), 『조선총독부관보』 873호(1915. 7. 1.).

66) 이진구, 「일제의 종교/교육 정책과 종교자유의 문제」, 『종교연구』 38(2005), 218-222

조선총독부는 1911년의 105인 사건이나 1915년의 「사립학교규칙」 개정 등으로 기선을 제압하기도 하지만, 1919년 3·1운동 이후에 기독교를 회유하는 조치를 취한다. 먼저, 1920년 3월에 「사립학교규칙」을 다시 개정해서 종교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든 '제6조의 2'를 삭제한다.<sup>67)</sup> 또한 1920년 4월에 「포교규칙」을 개정해서 신고 사항을 축소하고 벌금형을 삭제하고, 종교 시설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꾼다. 그리고 1917년 4월에 '사립연희전문학교 기독교연합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바 있지만<sup>68)</sup>, 1920년 5월에 '경성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의 교회법인 허가를 시작으로<sup>69)</sup> 선교사들이 희망했던 종교단체의 법인화를 허용한다.<sup>70)</sup>

또한 학교교육사업, 문서사업, 사회사업 등 공인종교의 간접적인 선·포교 활동도 지속된다. 이와 관련하여, 1923년 경기도에서는 진종대곡파(眞宗大谷派)가 경성불교자제회(京城佛教慈濟會), 북감리파(北監理派)가 동대문부인병원(東大門婦人病院), 장로파(長老派)가 '세브란스'병원, 남감리파가 남성병원(南星病院, 개성) 등의 종립병원을 경영한다.<sup>71)</sup>

그렇지만 전시체제 속에서 기독교는 변화를 겪게 된다. 예를 들어, 기독교는 1925년경 충남 강경보통학교 학생들의 신사참배 거부 사건처럼<sup>72)</sup> 신사참배 정책에 반대하다가 1936년 5월에 천주교, 동년 6월에 감리교, 1938년 9월에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수용한다.<sup>73)</sup> 그리고 1937년 10월부터 학교나 각종 집회에서 '황국신민체조'와 함께 「황국신민서사(皇國國民ノ誓詞)」를 읽는다.<sup>74)</sup> 1938년 2월에 「육군특별지원병령」(시행

쪽.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정규 과목이 아니라 방과후 '과의' 수업으로, '각종학교'에서는 성서교육과 예배의식을 정규과목으로 허용하는 식이다.

67) 「私立學校規則改正」(조선총독부령 제21호, 大正 9. 3. 1.), 『조선총독부관보』 2263호 (1920. 3. 1.).

68) 「私立延禧專門學校基督教聯合財團法人設立許可」(告示 第79號, 大正 6. 4. 10.), 『조선총독부관보』 1402호(1917. 4. 10.).

69) 「教會法人으로 京城區天主教維持財團許可」, 《동아일보》, 1920년 5월 9일자, 2면; 「宗教宣布와 法人許可, 朝鮮人の 各教에는 無關」, 《매일신보》, 1920년 5월 9일자, 2면.

70) 「法人ノ設立及監督ニ關スル規程」(부령 제71호, 1912. 3. 30.), 『조선총독부관보』 475호(1912. 3. 30.); 윤선자, 「1920년대 일제의 기독교 회유정책과 천주교회의 조응(照應)」,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경인문화사, 2001), 219-221쪽; 한동민, 앞의 논문, 177쪽.

71) 「宗教病院의 惠澤, 경기도 관내에만 입원환자의 매일 평균이 사백이십사인식」, 《동아일보》, 1923년 5월 25일자, 11면.

72) 「強制 參拜問題(上), 逆理에 徹底한 教育當局者」, 《동아일보》, 1925년 3월 18일자, 1면; 「江景普校生徒 神社參拜를 拒絶, 예수 믿는다고 신사참배 거절, 절대로 참배는 안한다고 휴도」, 《동아일보》, 1925년 5월 29일자, 6면.

73)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기독교문사, 1997b), 289-301쪽.

1938. 4. 3.), 동년 3월에 「제3차조선교육령」이 공포된 후, 동년 7월에 중일전쟁 1주년을 기념하여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 결성되자<sup>75)</sup> 공인종교도 ‘황거요배(皇居遙拜), 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 낭송, 일장기 게양’ 등에 참여하고<sup>76)</sup> 총후보국(銃後報國)·종교보국(宗教報國) 담론을 실천한다.<sup>77)</sup> 이어 1939년 11월에 「조선민사령」 개정과 「조선인의 씨명(氏名)에 관한 건」이 공포된 후<sup>78)</sup> 창씨개명에도 적극 참여한다.

특히 미·일관계가 악화되면서 1940년 11월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먼저 철수하고, 1941년 3월 말까지 캐나다장로회, 호주장로회 등 외국 선교사도 철수하자<sup>79)</sup>, 조선의 기독교를 일본의 기독교에 예속시키는 기독교의 일본화 정책이 시행된다. 이미 장로회가 1939년 9월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예수교장로회 연맹’을 결성한 바 있지만, 1942년 5월에 부임한 총독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는 가미다나(神棚)까지 교회에 봉안하게 한다. 이어 장로교는 ‘일본 기독교 조선장로교단’(1943. 5.), 감리교는 ‘일본 기독교 조선 감리교단’(1943. 8.)으로 개칭된다. 안식교와 성결교 등은 1943년 12월에 강제 해산을 당한다. 그리고 1944년 7월 육군대장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의 총독 부임 1년 후인 1945년 7월에는 조선의 모든 교파교회가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통합된다.<sup>80)</sup> 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서 빠져나가자 ‘조선 기독교의 일본 기독교화’를 시도한 셈이다.

공인종교에 비해 신종교에 관한 법규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도

74) 「誓詞를 作成 配布, 各學校, 各團體에서 隋時 朗唱, 今 四日부터 一齊 施行」, 「臣民의 信念 高調, 鹽原 學務局長 談」, 《동아일보》, 1937년 10월 5일자, 2면.

75) 「今日 國民精神總動員 朝鮮聯盟 創立 盛大」, 《동아일보》, 1938년 7월 2일자, 2면.

7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앞의 책(1997b), 275-276쪽.

77) 「銃後報國의 強調」, 《동아일보》, 1938년 4월 26일자, 1면; 「宗教報國의 道에 邁進하기를 期하라」, 《동아일보》, 1938년 10월 8일자, 1면.

78) 「朝鮮民事令中改正」(制令 第19号, 昭和 14. 11. 10.), 『官報』 3866號(大藏省印刷局, 1939. 11. 24.); 「朝鮮人ノ氏名ニ關スル件」(制令 第20号, 昭和 14. 11. 10.), 『官報』 3866號(大藏省印刷局, 1939. 11. 24.); 「紀元 2600年 紀念郵便印」, 《동아일보》, 1940년 1월 25일자, 2면; 「陸軍 記念 行事에도 2600年 奉祝色, ‘軍民一體’를 強化」, 《동아일보》, 1940년 2월 14일자, 2면; 「朝鮮民事令中改正ノ件等施行期日」(부령 제219호, 1939. 12. 26), 『官報』 3919號(大藏省印刷局, 1940. 2. 1.)에 따르면, 「개정 조선민사령」과 「조선인 씨명에 관한 건」은 1940년(소화 15)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7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앞의 책(1997b), 282-283쪽; Wi Jo Kang 저, 서정민 역, 앞의 책, 113쪽; 조선혜, 「1941년 ‘만국부인기도회사건’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5(1996), 141-142쪽, 145-148쪽.

8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위의 책, 302-309쪽; Wi Jo Kang 저, 서정민 역, 위의 책, 114-115쪽.

제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보안법」을 포함하여 치안유지 관련 법이 지속적으로 적용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에 신종교의 종류는 급격히 많아진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1935년에 발간된 『조선의

표3- 조선의 신종교(類似宗教團體)(명칭 기준)

	1910년 이전	1910년 이후	1920년 이후	1930년 이후
東學系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도교(1905, 손병희)</li> <li>• 사천교(1906, 이응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종교(1914, 김중간)</li> <li>• 동학교(1915, 김주희 ← 1909 김시중)</li> <li>• 무궁도(1917, 박정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림교(1920, 김상설 · 이옥정)</li> <li>• 상제교(1921, 김연국)</li> <li>• 평화교(1922, 정봉준)</li> <li>• 대화교(1923, 윤경중 ← 1920 용화교 ← 제우교, 손은식)</li> <li>• 인천교(1923, 이희룡 ← 1912 백도교, 전연운)</li> <li>• 백백교(1923, 차병간 ← 1912 백도교, 전연운)</li> <li>• 수운교(1923, 이상룡)</li> <li>• 천명도(1925, 우종일 · 박형근 ← 1924. 8. 백백교)</li> <li>• 무극대도교(1926, 김형범)</li> <li>• 대도교(1928, 이달호 · 김응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법교(1932, 나중헌)</li> <li>• 천요교(1932, 황기동)</li> </ul>
吡嘑系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을교(1919 高 ← 보천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천교(1922 ← 1921 보화교 ← 1909 선도교, 차경석)</li> <li>• 미륵불교(1922 ← 불교진흥회 ← 1918 미륵불교, 김형렬)</li> <li>• 증산교(1924, 채경대 ← 보천교)</li> <li>• 무극대도교(1925, 조철제 ← 1921 천인교 · 무극교 ← 1919)</li> <li>• 용화교(1926, 이근하 ← 흡치교조 강일순)</li> <li>• 대세교(1927 ← 1926 삼신교, 강훈 ← 태을교)</li> <li>• 동화교(1928, 이상호 ← 보천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산대도교(1930, 안내성 ← 1909 태을교, 차경석 · 안내성)</li> <li>• 선도교(1930, 김흥권 ← 보천교)</li> <li>• 원군교(1933, 박안택 · 홍순옥 ← 보천교)</li> </ul>
佛敎系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각교(1922, 백상규 = 백용성 ← 1912 경성 선종 포교원 포교사)</li> <li>• 불법연구회(1924, 박중빈 ← 1919 불법연구회기성조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화교(1930, 권순채 ← 1888 오방불, 김치인)</li> <li>※ 광화연한도관(1929, 광화교와 대화교 합류)</li> <li>• 영각교(1933 ← 1919, 이호필)</li> </ul>

	1910년 이전	1910년 이후	1920년 이후	1930년 이후
佛敎系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7 저축조합</li> <li>• 불교극락회(1925, 박운교)</li> <li>• 감로법회(1925, 건봉사 포교사 김기선)</li> <li>• 금강도(1926, 이상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4 진중동불교와 합동 ← 1917 관성제군교 연가(지부)</li> </ul> </li> <li>• 원용도(1927, 홍우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1 불교선양보경회)</li> </ul> </li> <li>• 정도교(1927, 이선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22 각세교 ← 시천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각현원교(1933, 김영호)</li> </ul>
崇神系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군교(1910.9, 정훈모 ← 1909 대종교 ← 1904, 백봉)</li> <li>• 대종교(1916 ← 1899, 한명윤 ← 1893 신교, 김엽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성교(1920, 박기홍 · 김용식)</li> <li>• 송신인조합(1920, 小峯源作)</li> <li>• 칠성교(1922, 김일필 · 김서봉 · 이병규 ← 김달봉)</li> <li>• 신리종교(1923, 윤주성 ← 1922 신리교 교정회 ← 경신교 풍사 ← 신사봉축회)</li> <li>• 지야교(1924, 김진성)</li> <li>• 기사교(1926, 한태리)</li> <li>• 문화연구회(1927, 이중윤)</li> <li>• 교정회(1927, 임양보)</li> <li>• 황조경산승신교(1928, 松田晴暉)</li> <li>• 사산신도동지회(1929, 김수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성교(1930, 진용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군교도 ← 시천교도)</li> </ul> </li> <li>• 영가무교(1930, 전일찬)</li> <li>• 성화교(1931, 윤익선)</li> <li>• 영산회(1931, 양정묵)</li> <li>• 기사교(1933, 김동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19 기사교)</li> </ul> </li> </ul>
儒敎系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극교(1907, 송병화)</li> <li>• 大宗敎(1907, 하상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성교회(1923, 조형하)</li> <li>• 모성원(1929 ← 태극도)</li> <li>• 성도교(1929, 이만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운교 간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성원(1930)</li> <li>• 공자교(1931)</li> </ul>
不明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화교(1921, 우수길)</li> <li>• 천화교(1925, 이현주 · 김영학)</li> <li>• 각세도(1926, 이상재 · 박경화)</li> <li>• 천인도(1929, 김중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천교(1930, 김중태): 천인도의 개칭</li> </ul>

유사종교』의 내용을 신종교의 발생 순서로 정리하면 표3과 같다.<sup>81)</sup>

81) 村山智順, 앞의 책, 18-475쪽. 이 자료에 명시된 연대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평일, 「소래 김중건과 항일민족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이처럼 1920년대에 신종교단체의 종류가 급증하지만 신종교단체는 계속 '종교'로 공인받지 못하고, 따라서 종교의 자유도 갖지 못한다. 학교를 운영했던 천도교 정도를 제외하면 '교육과 종교의 분리' 원칙과도 무관한 상황에 놓이고, 오히려 일반 단체에도 들지 못한 '이상한' 단체로 인식되어 끊임없이 「보안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전시체제하에서도 신종교단체는 계속 해산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 피신했던 손병희가 신종교에 대한 일본정부의 인식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1905년에 '천도교'를 표방한 이유, 그리고 일제강점기 종규 법규 속에서 '종교'로 공인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신종교단체가 계속 등장한 이유는 추후에 해명될 필요가 있다.<sup>82)</sup>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특히 「포교규칙」이 대변하는 조선총독부의 종교 법규는 조선 유교, 불교, 기독교, 신종교, 무속 등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불교와 기독교는 공인종교, 유교는 종교와 무관한 존재, 신종교와 무속은 종교 흉내를 내는 '이상한' 존재가 되고, 기독교와 불교 중심의 종교 지형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종교와 유교는 1919년 3·1운동 이후에 통제 완화 정책의 대상이 되어, 전시 상황에서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대체로 순응 또는 타협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종교 법규가 만들어낸 이러한 종교 지형은 그대로 유지되어 해방 이후로 이어진다.

26(2000), 65쪽에 따르면, 원종교의 경우에는 소래 김중건이 1913년 1월 1일을 건원(建元)으로 선포해서 원종을 창립했기 때문에 1914년이 아니라 1913년이다. 청림교(淸正)의 경우에는 1913년에 창립되어 3·1운동 직후에 북만주에서 항일군사조직인 야단(野團)을 조직한 바 있고(최봉룡, 「만주국의 종교 정책과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 『민족과 문화』 12, 2003, 94-97쪽), 1915년에 황해도 신천군에서 조선총독부에 보낸 기밀 문건에 청림교라는 표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西間島移住不平者ノ書面)(警高機發 第1432號, 1915. 10. 18.), 문서철: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滿洲の部 5』, 1920년은 조직의 재정비 시점을 의미한다. 다만, 〈청림교지선포문〉이 《매일신보》에 발표된 시점은 1920년 3월 24일이다.

82) 신종교단체가 계속 등장한 상황을 '포섭(包攝)과 배제(排除)'의 틀로 이해할 수도 있다. '공인종교'가 포섭의 대상, '비밀결사'가 배제의 대상이었다면 '유사종교'가 그中间的 회색지대에 놓여 '포섭'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식의 이해이다. 물론 포섭 가능성만으로 신종교단체의 지속적인 등장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법적 차원의 이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이해에 대해서는 靑野正明, 「植民地朝鮮の神社に祀られなかつた神々-宗教的な法的秩序の内と外」, 磯前順一·川村覺文 編, 『他者論的轉回 宗教と公共空間』(京都市: ナカニシヤ出版, 2016), 51-79쪽 참조.

## V. 맺음말

이 연구는 종교 지형과 법제의 연관성, 즉 법제가 한국의 종교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였다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제에 따라 일제강점기의 주요 종교 법규와 모법, 종교 법규의 의미 층위, 종교 법규와 조선 사회에 형성된 종교 지형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제 I장에서는 다종교와 다종교사회를 법제적 차원에서 구분하면서 종교 지형과 법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에서 양자의 관계를 보려면 종교 법규가 처음 만들어진 일제강점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제 II장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신사신도와 교파신도뿐 아니라 각각 유교와 불교에만 적용된 법규, 그리고 종교 일반에 적용된 법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사찰령」, 「신사·사원규칙」, 「포교규칙」의 모법이 일본 법규라는 점을 밝혔다.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종교 법규의 모법이 일본의 종교 법규였다는 점은 일본정부가 조선총독부를 통해 자국의 종교 경험을 조선에 이식했다는 것을, 조선총독부가 종교별로 별도의 법규를 적용했다는 점은 조선 사회에서 종교별 인식을 다르게 생산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 III장에서는 조선에서 시행된 종교 법규가 「일본헌법」의 하위 법규라는 점, 그리고 여러 종교 법규의 의미 층위들이 교파신도·불교·기독교만 종교로 보고, 유교와 신종교를 종교에서 배제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미 층위들은 조선의 종교를 천황 중심의 세계관에 편입시키려는 일본정부의 의도를 시사한다.

제 IV장에서는 여러 종교 법규에 내재된 의미 층위들이 조선 사회에서 현실화되어 불교와 기독교 중심의 종교 지형이 만들어졌고, 유교와 신종교가 종교 범주에서 배제되는 효과를 생산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각 종교 법규의 영향으로 불교는 30본산-31본산-조선불교중앙교무원-조계종으로 이어지는 일원화 정책, 기독교는 선교사들과의 관계와 국제 정세를 고려한 교파별 다원화 정책과 전시체제하의 일본화 정책, 유교는 사회교화 정책 등 서로 다른 정책적 대상이 되고, 신종교는 천황 중심의 세계관 또는 사회교화에서 배제된다.

이 글을 통해 조선총독부가 일본의 여러 종교 법규를 토대로 조선에서



여러 종교 법규를 시행하고, 「일본헌법」이 지향하는 ‘천황 중심의 세계관 실현’이라는 목적과 종교 법규들의 의미 층위에 따라 조선의 종교 지형이 구축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역사에 나타난 ‘불교와 기독교만 종교이고,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 윤리이며, 신종교단체는 종교가 아니라 유사종교라는 인식’이 일제강점기 종교 법규의 영향이라는 점과 함께, 추후에 종교 법규와 종교 지형과 황민화의 연관성을 성찰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의 종교 지형은 물론 다른 요인들의 영향도 있지만, 해방 이후까지 이어지는 측면들이 있다.<sup>83)</sup> 해방 이후에 정교 분리와 종교의 자유, 교육과 종교의 분리, 종교로 인한 차별 금지 등에 대한 법제가 이루어졌지만, 조계종을 정점으로 하는 불교계의 모습, 교파 중심의 경쟁 구도를 보이는 개신교계의 모습, 종교가 아니라 일종의 전통문화나 윤리로 인식되는 유교의 모습, ‘유사종교’로 인식되는 신종교의 모습 등이 해당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종교계가 학교교육과 사회사업을 중심 사업으로 삼아 교세 확장과 함께 대외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만들어 내려는 모습도 일제강점기의 종교 지형 속에서 공인종교가 시도했던 모습과 닮아 있다.

83) 해방 이후, 특히 미군정기의 종교 상황, 종교 관련 법, 그리고 공인교적 종교정책에 대해서는 강돈구, 「미군정의 종교정책」, 『종교학연구』 12(1993), 15-42쪽 참조.

## 참 고 문 헌

### 1. 1차 자료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군형집행법)」.

《동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 《매일신보》,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 《신한민보》.

『조선총독부관보』, 『官報』(大藏省印刷局).

「[法人組合登記] 財團法人 明倫專門學校 變更」, 『朝鮮總督府官報』 5349號, 1944.

「經學院規程」(부령 제73호, 明治 44. 6. 15.).

「官國幣社以下神社ノ祭神, 神社名, 社格, 明細帳, 境内, 創立, 移轉, 廢合, 參拜, 拜觀, 寄附金, 講社, 神札等ニ關スル件」(內務省令 第6號, 大正 2. 4. 21.), 広島県神職管理所 編, 『現行神社法令』. 広島県: 広島県神職管理所, 1914.

「大日本帝國憲法」(제정 1889. 2. 11. 시행 1890. 11. 29.).

「明倫專門學校設立」(조선총독부 고시 제397호, 昭和 17. 3. 25.).

「明倫專門學院規程」(부령 제13호, 昭和 14. 2. 18. 시행 昭和 14. 4. 1.).

「明倫學院規程」(부령 제13호, 昭和 5. 2. 26.).

「墓地, 火葬場, 埋葬及火葬取締規則中改正」(부령 제152호, 大正 8. 9. 30. 시행 大正 8. 10. 15.).

「墓地火葬場埋葬及火葬取締規則」(부령 제123호, 明治 45. 6. 20.).

「法人ノ設立及監督ニ關スル規程」(부령 제71호, 明治 45. 3. 30.).

「私立延禧專門學校基督教聯合財團法人設立許可」(告示 第79號, 大正 6. 4. 10.).

「私立學校規則」(부령 제114호, 明治 44. 10. 20. 시행 1911. 11. 1.).

「私立學校規則改正」(부령 제21호, 大正 9. 3. 1.).

「私立學校規則中改正」(부령 제24호, 大正 4. 3. 24. 시행 1915. 4. 1.).

「社寺, 宗教-寺法認可」. 『조선총독부관보』 제556호, 1912. 7. 4.

「社寺, 宗教-住持就職認可」. 『조선총독부관보』 제369호, 1911. 11. 18.

「社寺取扱概則」(明治 11. 9. 9. 內務省 達乙 第57號). 市岡正一 編, 『大日本地方政典』, 東京: 博行館, 1897.

「寺院規則」(부령 제80호, 昭和 11. 8. 11.).

「寺刹ノ宗旨稱號ヲ妄リニ設ケンメサル件」(內務部長官 官通牒第229號, 明治 45. 6. 26.).

「寺刹令」(制令 제7호, 明治 44. 6. 3. 시행 1911. 9. 1.).

「成均館官制改正件」(칙령 제76호, 隆熙 2. 10. 29.).

「神佛教導職ヲ廢シ住職ヲ任免シ教師ノ等級進退ハ各管長ニ委任等ノ儀」(太政官

- 布達 第十九号, 明治 17. 8. 11.).
- 「神佛道以外ノ宗教ノ宣布及堂宇會堂說教所講義所取締規程」(內務省令 第41號, 明治 32. 7. 27.). 文部省宗教局, 『宗教要覽』, 東京: 文部省宗教局, 1916.
- 「神祠ニ關スル件」(부령 제21호, 大正 6. 3. 22.).
- 「神社ノ神職ニ關スル件」(관통첩 제120호, 大正 5. 7. 19.).
- 「神社規則」(부령 제76호, 昭和 11. 8. 11.).
- 「神社寺院規則」(부령 제82호, 大正 4. 8. 16. 시행 1915. 10. 1.).
- 「神社寺院規則ハ昭和十一年八月十日限リ之ヲ廢止ス」(부령 제81호, 昭和 11. 8. 11.).
- 「儀禮準則制定ニ關スル件」(官通牒 제39호, 昭和 9. 11. 10.).
- 「日本國憲法」(昭和 21. 11. 3. 시행 1947. 5. 3.).
- 「日韓協約」(명치 38. 11. 17. 광무 9. 11. 17.), 統監府總務部 總務部 內事課 編, 『韓國事情要覽』, 京城: 日韓圖署印刷會社, 1906.7.
- 「朝鮮ニ施行スヘキ法令ニ關スル法律」(법률 제30호, 明治 44. 3. 24.).
- 「朝鮮民事令中改正」(制令 第19号, 昭和 14. 11. 10). 『官報』 3866號, 大藏省印刷局, 1939. 11. 24.
- 「朝鮮民事令中改正ノ件等施行期日」(朝鮮總督府令 第219号, 昭和 14. 12. 26). 『官報』 3919號, 大藏省印刷局, 1940. 2. 1.
- 「朝鮮人ノ氏名ニ關スル件」(制令 第20号, 昭和 14. 11. 10). 『官報』 3866號, 大藏省印刷局, 1939. 11. 24.
- 「宗教ノ宣布二關スル規則」(통감부령 제45호, 明治 39. 11. 17. 시행 1906. 12. 1.). 송병기 편, 『통감부법령자료집 (상)』,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2.
- 「祝祭日當日私立宗教學教學式禮拜ニ關スル件」(관통첩 제209호, 大正 4. 7. 1.).
- 「布教規則」(부령 제83호, 大正 4. 8. 16. 시행 大正 4. 10. 1.).
- 「郷校財産管理規程」(學部令 제2호, 隆熙 4. 4. 23.).
- 「郷校財産管理規則」(부령 제91호, 大正 9. 6. 29.).
- 加藤政之助, 『韓國經營』. 東京: 実業之日本社, 1905.
- 警視庁總監官房文書課 編, 『警察法令類纂』 第2輯. 東京: 自警會, 1927.
- 高橋友太郎, 『(改正) 大日本統計表一覽』. 東京: 春江堂, 1911.
- 内山正如・瑜伽理円, 『世界宗教一斑』. 東京: 博文館, 1900.
- 渡辺兵吉 編, 『宗教法案雜纂』. 東京: 六合館, 1900.
- 服部正貞, 『僧侶必携 現行寺院法規』. 東京: 寿永堂, 1891.
- 山崎丹照, 『外地統治機構の研究』. 東京: 高山書院, 1943.
- 永野清・田口春二郎, 『朝鮮行政法要論. 各論』. 巖松堂京城店, 1915.
- 宗教行政研究會 編, 『(昭和9年版) 宗教法令類纂』. 東京: 宗教行政研究會, 1934.

村山智順, 『(調査資料 第42輯) 朝鮮の類似宗教』. 朝鮮總督府, 1935.  
 韓國駐箚憲兵隊司令部, 『韓國社会略說』. 韓國駐箚憲兵隊司令部, 1910.  
 「宗告文」. 『曹溪宗報』 제21호, 朝鮮佛教 曹溪宗 總本寺 太古寺, 1941.  
 朝鮮總督府社會課長, 「朝鮮の社會事業(八)」. 『朝鮮社會事業』 12-6, 朝鮮社會事業協會, 1934.

## 2. 단행본

고병철, 『한국 중등학교의 종교교과교육론』. 박문사, 2012.  
 Wi Jo Kang 저, 서정민 역, 『한국 기독교사와 정치』.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5.  
 카미벳부 마사노부, 『近現代 韓日 宗教政策 比較研究: 佛教教團의 變遷을 中心으로』.  
 지식과 교양, 201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997a.  
 \_\_\_\_\_,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기독교문사, 1997b.

## 3. 논문

강돈구, 「전통사상과 종교 간의 대화」. 『종교연구』 4, 1988.  
 \_\_\_\_\_, 「미군정의 종교정책」. 『종교학연구』 12, 1993.  
 김광식, 「대한불교조계종의 성립과 성격: 1941-1962년의 조계종」. 『한국선학』 34, 2013.  
 김경재, 「종교 다원주의와 예수그리스도의 주성」. 『신학연구』 27, 1986.  
 김순석, 「朝鮮總督府의 〈寺刹令〉 공포와 30 본사 체제의 성립」. 『한국사상사학』 18, 2002.  
 김중서, 「現代 宗教多元主義의 理解와 克服: P. L. Berger와 M. Eliade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7-3, 1984.  
 류경희,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힌두교와 기독교 태도의 비교」. 『종교학연구』 8, 1989.  
 박선영, 「불교적 교육과 종교적 다원주의」. 『한국불교학』 11, 1986.  
 안유림, 「일제의 기독교 통제정책과 〈포교규칙〉」. 『한국기독교와 역사』 29, 2008.  
 윤선자, 「1915년 〈포교규칙〉 공포 이후 종교기관 설립 현황」. 『한국기독교와 역사』 8, 1998.  
 \_\_\_\_\_, 「1920년대 일제의 기독교 회유정책과 천주교회의 조응(照應)」.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경인문화사, 2001.  
 이진구, 「일제의 종교/교육 정책과 종교자유의 문제」. 『종교연구』 38, 2005.  
 조선훈, 「1941년 '만국부인기독교회사'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5, 1996.  
 최봉룡, 「만주국의 종교 정책과 재만 조선인의 종교 활동」. 『민족과 문화』 12, 2003.

한동민, 『‘寺刹令’, 體制下 本山制度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青野正明, 「植民地朝鮮の神社に祀られなかつた神々—宗教的な法的秩序の内と外」. 磯前順一・川村覺文 編, 『他者論的轉回 宗教と公共空間』. 京都市: ナカニシヤ出版, 2016.

## 국 문 초 록

이 글의 목적은 일제강점기의 사례를 가지고 법제가 종교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일제강점기의 주요 종교 법규와 모법(母法), 종교 법규의 의미 층위, 종교 법규와 조선 사회에 형성된 종교 지형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종교 지형과 법제의 연관성은 법제가 종교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제I장(머리말)과 제V장(맺음말)을 제외하면, 제II장(일제강점기의 주요 종교 법규와 모법)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종교 법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법규를 신사신도와 교파신도에 적용한 법규, 조선의 유교와 불교에 적용한 법규, 그리고 종교 일반에 적용한 법규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사찰령」, 「신사·사원규칙」, 「포교규칙」의 기원이 일본 법규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가 법규를 구분해서 조선 사회에서 종교별 인식을 다르게 생산했다는 점, 일본정부가 조선총독부를 통해 자국의 종교 경험을 조선에 이식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제III장(종교 법규의 의미 층위)에서는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종교 법규의 의미 층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종교 법규들이 「일본헌법」의 가치를 지향했다는 점, 그리고 교파신도·불교·기독교만 종교로 보고, 유교와 신종교를 종교에서 배제하는 의미 층위들을 확산시켰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미 층위들은 조선의 종교를 천황 중심의 세계관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시사한다.

제IV장(종교 법규와 조선의 종교 지형)에서는 여러 종교 법규의 의미 층위들이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종교 법규가 유교와 신종교를 종교 범주에서 배제시키면서 불교와 기독교 중심의 종교 지형을 만들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종교 법규의 영향 때문에 불교, 기독교, 유교가 서로 다른 정책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신종교가 천황 중심의 세계관 또는 사회교화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이 글을 「일본헌법」의 가치를 지향한 종교 법규와 황민화의 연관성,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종교 지형의 연관성, 그리고 해방 이후의

종교 법제와 종교 지형의 연관성 등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 글이 종교 지형과 그 변화를 고찰할 때 법제를 주요 변수로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17. 2. 8.

**심사일** 2017. 4. 3.

**게재 확정일** 2017. 5. 24.

**주제어(keyword)** 일제강점기(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조선총독부(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the Joseon), 종교 법규 (religious law and regulation), 종교 지형(the religious topography/the religious landscape), 황민화론(Japanization theory), 종교 편견(religious prejudice), 종교 차별(religious discrimination)

## Korean Religious Topography and Law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 Byoung-chul**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legal system on the Korean religious landscap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r this purpose, I analyzed the major religious laws and their semantics, and examined the influence of those laws and regulations on religious domain under Japanese imperialism.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legislation is a major variable affecting religious topography.

Except for chapter I ('Introduction') and chapter V ('Conclusion'), I analyzed in detail the religious laws and regulation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chapter II ('Major Religious Laws and Mother Laws Under Japanese Imperialism'). These laws and regulations can be divided into a few groups which applies accordingly to Shinto, Confucianism, Buddhism, and all other religions in general. Moreover, some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Temple Ordinance of 1911(寺刹令)」, 「The Regulation on Shinto-shrine of 1915(神社・寺院規則)」, and 「The Regulation on Proselytizing of 1915(布教規則)」 origin in Japanese law. Hence, I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distinguished and discriminated religions using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and that Japanese authorities transplanted their imperialistic religious experience into Joseon.

In chapter III ('Layers of Meaning of Religious Laws and Regulations'), I analyzed different layers of meaning of religious laws and regulations enforced by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On the basis of these, I pointed out that the religious laws and regulations were oriented toward emperor-centered values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nd accordingly the stratum of meaning had spread, and now excluded Confucianism and new religions from the category of religion. This suggest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had intentions to incorporate Joseon's religions into emperor-centered worldview.

In Chapter IV ('Religious Laws, Regulations, and Topography of Joseon'), I analyzed how semantic layers of various religious laws and regulations affected the Joseon society. Therefore, I pointed out that the religious laws and regulations excluded Confucianism and new religions from the religious categories and created 'Buddhism and Christianity-centered' religious landscape. Also I pointed out that different policies were applied to Buddhism, Christianity, Confucianism, and new religions because of differences in religious laws and regulations.

Finally, this paper is drawing attention to the relation between modern religious regulations and religious topography through the case of Japanese Imperialism. I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legal system as some sort of a crucial variable in understanding religious landscape and its changes.